제7축: 상속 설계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상속은 고객들이 소홀히 하는 축이자 두 체계가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갈라지는 축입니다. 스위스 상속법은 스위스 민법(CC) 제457조 이하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이후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생존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 유류분을 가지며, 부모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창업자에게 자녀가 있으면 모든 토큰을 재단에 남길 수 없습니다. 자녀가 동의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자녀의 유류분을 충족할 만큼 상속재산이 큰 경우는 예외입니다.[1] 싱가포르는 비무슬림에 대해 1838년 유언법(Wills Act 1838)에 따른 유언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무유언상속은 1967년 무유언상속법(Intestate Succession Act 1967)이, 상속재산 관리는 1934년 유언검인 및 상속재산관리법(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1934)이 규율합니다. 무슬림의 상속재산은 1966년 무슬림법 시행법(Administration of Muslim Law Act 1966)과 파라이드(faraid)를 따릅니다.[2]

실무상 문제는 두 곳 모두 같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어느 체계에도 망인이 밝히지 않은 개인키를 복구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체계 모두 설계자로 하여금 유언 밖에 보관하는 키 관리 프로토콜을 마련하도록 이끕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유언이 유언검인 시 공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개되고, 스위스에서는 상속인들 앞에서 개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언집행자를 인정하는 수탁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가족이 국제적인 경우에는 생전에 개인키를 보유하는 신탁이나 재단을 활용하도록 이끕니다. 싱가포르는 라이선스를 받은 신탁회사를 통한 국내 신탁을 제공합니다. 스위스는 재단을 제공하지만, 재단은 좁은 한도를 넘어 사적 부양 목적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스위스는 헤이그 협약에 따라 외국 신탁을 승인하지만, 연방평의회가 2024년 신탁 법안을 보류한 이후 국내 신탁 제도는 없습니다.[3]

질문	스위스	싱가포르
유언의 자유	유류분에 의해 제한(CC 제470조 이하)	비무슬림은 완전한 자유. 무슬림은 파라이드
국내 신탁	없음. 외국 신탁은 승인	있음. 라이선스를 받은 신탁회사
사적 목적의 재단	가족재단은 제한적(CC 제335조). 프로토콜 재단은 공익 목적	보증유한회사(CLG) 가능하나 과세. 신탁 선호
유언집행자의 개인키 접근	유언집행자(Willensvollstrecker, CC 제517조). DEBA 제242b조의 데이터 권리는 파산 시에만	유언검인장에 따른 유언집행자. 거래소에 대한 법원 명령
부부재산	법정 부부재산제인 소득참가제(CC 제196조 이하)가 토큰에도 적용	1961년 여성헌장(Women's Charter 1961)에 따른 부부재산 분할
상속세	칸톤(주) 세. 추크와 취리히에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면제	2008년 이후 없음
국경 간 상속	PILA 제86조 이하. 외국 국적자에 대한 반정(renvoi)	보통법상 저촉 규칙. 토큰의 소재지법(lex situs)은 논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체크리스트

두 허브 모두에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독자는 연말 전에 다음을 해 두어야 합니다. - 모든 지갑과 거래소 계정을 관할, 수탁기관, 대략적 가액과 함께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어떤 자산이 사적 투자이고 어떤 자산이 사업에 속하는지 정합니다. 스위스의 영업적 거래자 판정과 싱가포르의 영업의 징표는 모두 여러 해에 걸친 패턴을 보기 때문입니다. - 각 수탁기관의 약관이 '귀하를 위해 보유'(스위스) 또는 '귀하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싱가포르)라고 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키 관리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유언 밖에 보관합니다. - 상속재산에 유류분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싱가포르 신탁이나 스위스 유언집행자가 개인키를 보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스위스와 싱가포르 수탁기관 간 이전에 필요한 트래블 룰 데이터를 맞춰 둡니다.

주

1. 2020년 12월 18일 연방법(상속법 개정)으로 개정된 CC 제470조 및 제471조, 2023년 1월 1일 시행(AS 2021 312). 제D편 제VIII장 참조. ↩
2. Wills Act 1838; Intestate Succession Act 1967;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1934; Administration of Muslim Law Act 1966, s. 111 이하. 제J편 제VII장 참조. ↩
3. 연방평의회, 2023년 9월 15일 보도자료 및 스위스 신탁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2024년 결정; 가족재단에 관한 CC 제335조; 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and on their Recognition, 스위스에서 2007년 7월 1일 발효(SR 0.221.371). 제D편 제VIII장 및 제P편 제VIII장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